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2089호
2025년 5월 14일
수요일

선 람	기관의 장

공 고

○ 공 고 제 9 7 0 호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보 육 정 책 과 2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홍보실

공 고

남동구 공고 제2025-970호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 5. 14.

남 동 구 청 장**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에 따라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지침에 따른 연회비 면제 대상 중 일부 내용 개정
 - ‘한부모가정’ 을 ‘한부모가족’ 으로 용어 정비 (안 제9조제3항제2호)
 - ‘다문화가정’ 을 ‘다문화가족’ 으로 용어 정비 (안 제9조제3항제4호)
 - ‘세자녀’ 를 ‘두 자녀’ 로 개정 (안 제9조제3항제5호)
 - ‘영유아 위탁가정’ 신설 (안 제9조제3항제8호)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6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장)에게 서면이나 전화 또는 FAX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 보내실 곳

- (우 21589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45 평생학습관 2층 보육정책과 /
☎ 032-453-5844, FAX 032-453-5889)
- 남동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입법예고)

4.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2025년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3944(2023.03.02.)호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5년 월 일

제 출 자 : 남 동 구 청 장

☐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에 따라 조문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 지침에 따른 연회비 면제 대상 중 일부 내용 개정
 - ‘한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용어 정비 (안 제9조제3항제2호)
 -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으로 용어 정비 (안 제9조제3항제4호)
 - ‘세자녀’를 ‘두 자녀’로 개정 (안 제9조제3항제5호)
 - ‘영유아 위탁가정’ 신설 (안 제9조제3항제8호)

☐ 본 문 :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2025년도 도담도담 장난감월드 안내」(지침)
- 인천광역시 영유아정책과-3944(2023.03.02.)호

남동구조례 제 호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2호 중 “한부모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다문화가정”을 “다문화가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영유아 위탁가정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연회비 징수) ①·② (생략)	제9조(연회비 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여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③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u>한부모가정</u>	2.----- <u>한부모가족</u>
3. 삭제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u>다문화가정</u>	4.----- <u>다문화가족</u>
5. <u>세자녀</u> 이상을 둔 가정	5. <u>두 자녀</u>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u><신설></u>	8. <u>영유아 위탁가정</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인천광역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안내』 추가개정안 송부

1. 관련근거 : 영유아정책과-3076(2023.2.17), "『2023년도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안내』 송부"

2. 기 송부한 『2023년도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안내』를 붙임과 같이 추가 개정하여 송부하오니, 사업 집행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 개정안

2022년	2023년	개정 이유	시행일
연회비 면제대상 ○ 세 자녀 이상을 둔 가	연회비 면제대상 ○ 두 자녀 이상을 둔 가	안전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의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	2023. 3. 1. 시행
정	정	임원화	

붙임 2023년도 도담도담 장남감월드 안내 1부. 끝.

인천광역시장



수신자 인천광역시강화군수(사회복지과장), 인천광역시동진군수(사회복지과장),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 인천광역시동구청장(여성보육과장),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영유아정책과장),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출산보육과장), 남동구청장(보육정책과장), 인천광역시무량구청장(영유아보육과장), 계양구청장(여성보육과장), 인천광역시구정청(가정보육과장), 인천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주무관 유다혜 보육지원담당 오예원 영유아정책과 전결 2023. 3. 2. 장 서미숙

협조자

시행 영유아정책과-3944 (2023. 3. 2.) 접수 보육정책과-3930 (2023. 3. 2.)

우 21555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 6층(영유아정 / <https://www.incheon.go.kr/>)

전화번호 032-440-3414 팩스번호 032-032440-8725 / dasome11@korea.kr / 대국민 공개

부서별 협의 및 의견수렴서

검 토 구 분		유	무
검토사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 행정규제, 물가대책위 등 심의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6. 그 밖의 문제점		
부서별 의견			
협의개요	부 서	제출의견	검토내용